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January 31, 2023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을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KPMG report: 필라 2 최저한세 및 국가별보고서 정보의 활용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가 2015 년에 국가별보고서(CbCR) 제출의무를 시행했을 때만 해도 각 국의 과세당국은 세무적 목적에서만 활용 가능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으나 납세자들은 해당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10 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마스 직전, 유럽연합은 Pillar 2 의 최저한세 지침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OECD 는 '국가별보고서'상 수치를 토대로 일정 요건 충족 시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세이프 하버(Transitional Safe harbour)를 통해 Pillar 2 계산의무를 면제하는 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납세자 혹은 전문가들은 국가별보고서 정보가 당초 도입 취지를 넘어서는 도구(Tool)로써 활용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가별보고서의 정보는 결국 미국을 포함하여 많은 다국적기업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 유럽연합의 국가별보고서 공개 지침은 2021 년에 승인되었으며 2025 년에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루마니아와 같은 일부 국가의 경우, 조기 채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호주의 2022 – 2023 예산안에는 국가별보고서 공개를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채택될 경우, 2023 년 7 월 1 일 이후 시작되는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 재무회계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납부하는 소득세에 대한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 중입니다.

국가별보고서 공개 시 최저한세 공개 또한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내 법인이 있는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각각의 유럽연합 국가에 소재한 법인 및 유럽연합의 Grey/Black 리스트에 있는 국가에 소재한 법인들의 법인세 및 나머지 국가들에 소재한 법인들의 합산 법인세를 공시해야 합니다. 다국적기업들은 이미 다년간 국가별 법인세 정보를 국가별보고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국적기업들은 기업 재무제표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해당 정보가 어떻게 보이는지, 특정 국가를 세분화하거나 다른 국가들을 통합하는 부분등을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할지 고민해야합니다. 이는 다국적기업들이 Pillar 2 를 위해 국가별보고서를 토대로 세이프 하버(Transitional Safe harbour) 계산 시 작성된 정보 출처에 대한 검증과 정보 기재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세에 대한 정보는 다국적기업의 전체 세금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다국적기업은 간접세, 관세, 급여세, 부동산세, 탄소세 등 기타 중요한 유형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대부분의 다국적기업들이 이 정보를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에 일관성있게 정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세를 넘어서는 국가별 각종 세금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가 현 시점에서 적합한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국적기업들은 이 계산에 그들이 납부하는 모든 종류의 세금을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주요 항목들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효율적인 그림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세금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투명성을 요구하는 이해 당사자들을 향한 방향을 고려 시, 시스템을 구축, 개선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다국적기업들이 총 세금 기여 정보를 확보한다면, 그들은 한 걸음 물러나서 그들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국적기업들은 과세의 주요 측면에 대한 접근 방식과 해당 접근 방식의 거버넌스를 설명하는 그룹 차원의 조세 정책과 함께 그들의 세금 정보를 공개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각 기업들의 세무부서들은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부서와 연계하여 현재 거의 모든 기업들이 발간하고 있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조세 자료 및 이야기를 포함해야 할지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다국적기업들이 조세 투명성 및 규정 준수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다국적기업들이 다가오는 최저한세 규정 준수를 위해 국가별 정보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은 국가별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확인해 볼 시점입니다.

OECD: BEPS 2.0 으로 인한 예상치를 상회하는 세수의 증가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는 지난 1 월 18 일에 국제세제 개편 합의 이행에 따른 세수 증가가 당초 예상보다 높을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글로벌 최저한세(15%)는 글로벌 법인세 수입의 9%에 해당하는 연간 약 2,200 억 달러의 글로벌 세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OECD 가 당초 예상한 Pillar 2 의 최저한세로 인한 추가 연간 세수 약 1,500 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 가장 규모가 크고 수익성 높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할권 간에 보다 공정한 과세권 분배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Pillar 1 은 이제 매년 약 2,000 억 달러의 이익에 대한 과세권한을 사업지 관할권에 할당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1 년 정보를 기반으로, 연간 130 억 - 360 억 달러의 글로벌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추정치는 직전 추정치인 1,250 억 달러에 비해 상당한 증가액을 보입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 및 개발도상국의 국가들은 이러한 조세 제도하에서 가장 많은 세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10월에 발표된 OECD의 초기 평가에 대한 업데이트는 조세개혁 설계의 수정과 범위 내 다국적기업들의 수익성 증가로 인해 Pillar 1 의 예상 수익이 증가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Pillar 2의 예상 수익 또한 증가된 것을 보여줍니다.

자세한 평가방법 및 경제에 끼치는 영향 등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추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조심 2022 서 0144, 2022.12.07

**제목: 국세청모형에 따른 지급보증료율이 무디스모형의 정상가격 범위 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경정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1.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해외자회사들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해외자회사들로부터 보증금액의 0.3%를 지급보증수수료로 수취
- 청구법인은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이하 “국세청모형”이라 한다)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율에 따라 계산된 지급보증수수료(1.2%)와 장부에 계상한 지급보증수수료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2012~2015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 청구법인은 국세청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율이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무디스모형에 의해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 하위값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경정청구 제기
- 처분청은 ① 청구법인이 국세청모형에 따라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율 중 무디스모형에 의하여 계산된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고, ② 그 외 무디스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 밖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실제 재무적 지원 제공한 해외자회사에 대하여는 무디스 모형 결과에 따른 하위값을, 나머지는 중위값을 적용하고, 그 외 나머지는 거부하는 처분 시행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5. 심판청구 제기

2. 쟁점

- 국세청 모형에 따른 지급보증료율이 무디스 모형의 정상가격 범위 이내에 있으나 실제 거래가격은 무디스 모형 정상가격 범위 밖에 있는 경우 경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무디스모형에 따른 조정 시 산출된 범위값 중 재무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는 하위값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중위값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청구법인 및 처분청 주장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주장
<p>새로운 모형이 제시되었다면, 기존 모형에 따라 세무신고를 진행하였던 납세자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국세청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율이 무디스모형의 정상가격 범위 이내일지라도 경정대상에 해당</p> <p>1) 이미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국세청모형에 따른 요율은 국조법상 정상가격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제로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보증요율(0.3%)이 무디스모형에 따른 정상가격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p> <p>2) 처분청 답변서에서는 증액경정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증액경정과 감액경정은 세법상 각각 다르게 취급되는 법률관계이자 독립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청의 증액경정과 감액경정의 형평성에 대한 주장은 비합리적임</p>	<p>국세청모형을 적용하여 신고한 가격이 무디스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으면 경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음</p> <p>1) 국세청모형에 따른 보증요율이 무디스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 경우 경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세청모형에 따라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이 무디스 모형을 활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는 자회사의 경우에만 경정하는 것이 타당</p> <p>2) 청구법인과 반대 사례의 경우(증액경정)라 하더라도 국세청모형에 따라 신고한 정상가격이 무디스모형 정상요율의 범위 내에 있다면 추가로 증액하지 않을 것. 오히려 0.3%와 비교하여 차액을 익금산입하는 증액경정처분 이야말로 납세자의 신뢰도를 해치는 행위임</p>
<p>무디스모형을 적용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모회사의 재무지원 실적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하위값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판단해야 함</p> <p>1) 대구지방법원은 무디스 모형의 내재적 한계를 고려하여 하위값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을 판시했으며, 해당 판단에는 모회사의 2차적 재무 지원 여부를 고려하지 않음</p> <p>2) 지급보증수수료는 국내 모회사가 추가 출자 등의 방법으로 해외자회사를 지원하겠다는 명시적인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임. 그러므로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위값을 적용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고, 모회사의 지원실적과 무관하게 모든 해외자회사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하위값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p>	<p>청구법인은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모회사의 재무적 지원실적과 무관하게 하위값을 정상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합리적이지 않음</p> <p>1) 정상가격 산출시 신고요율.모회사의 지원가능성.예상손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분위의 값 중 대푯값인 중위값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실제 지원 사례 등을 통하여 모회사의 지원가능성이 충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위값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p> <p>2) 무디스모형에 따라 신용등급 3단계 상향 조정(notching)하는 것은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인해 해외자회사의 부도율이 감소하는 것을 정상가격 범위 산출 시 이미 반영한 것으로, '모회사의 지급보증 자체로 해외자회사의 부도위험이 사실상 제거된 것이기 때문에 2차적인 재무지원 실적 존재유무와 관계없이 정상가격은 하위값을 기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p>

4. 판단

- 쟁점 1 의 경우,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지급보증용역 관련 실제 거래가격은 장부에 계상된 0.3%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조법 시행령 제 7 조 제 2 항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인 0.3%가 무디스모형에 따라 산출된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점, '무디스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 매뉴얼'은 국세청모형에 따라 신고한 정상가격이 무디스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 안에 있으면 납세자에게 추가로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가격이 무디스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 밖에 있는 경우까지 조정을 배제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제 거래가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국세청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무디스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경정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 쟁점 2 의 경우,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 중 대푯값에 해당하는 중위값을 우선 적용하고 청구법인(모회사)의 재무지원 실적을 추가 고려하여 재무지원을 받은 해외자회사에 대하여 특정값인 하위값을 적용한 것으로서 그 적용에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 점, 또한 무디스 모형 정상가격 산출과정에서 모회사의 지원가능성 여부가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적으로 산출된 정상가격을 적용할 경우에는 특정값을 적용할 만한 이유(이 건의 경우 지원실적)가 없는 이상 지원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대푯값인 중위값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그 외 청구법인(모회사)의 지원실적이 없는 해외자회사를 특별히 지원실적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재무지원 가능성만으로 특정값인 하위값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

03 관세

USMCA 분쟁패널 최종보고서 발표

1) 배경

- 2022년 3월 22일,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Roll-up*)을 둘러싼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분쟁을 해결할 분쟁조정패널이 구성됨 (패널의장 1명, 미국 임명 위원 2명, 캐나다 및 멕시코 임명 위원 각각 1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
- 2022년 12월 14일, USMCA 분쟁패널은 분쟁당사국에 전달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규정 해석이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림.
- 2023년 1월 11일, 동 판정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원산지 규정 해석에 관한 USMCA 분쟁해결패널(Dispute Settlement Panel)의 최종보고서(Final Report)가 발표됨.

2) 쟁점사항

■ “역내산 자동차 핵심부품 (Core Parts - Table A.2)의 Roll up*적용 가능여부”

- **(미국)** 자동차 원산지 판정 시, 기타 부품과 달리, 역내산 Core Parts의 경우 해당 부품에 포함된 실제 역내산 가치분 만큼만 역내산으로 사용 가능 (=Roll up 불가)
- **(캐나다, 멕시코)** 자동차 원산지 판정 시, 기타 부품과 마찬가지로, 역내산 Core Parts 가치 전체를 원산지율에 포함하여 산정 가능 (=Roll up 가능)

*Roll-up: 특정 부품이 역내산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부품을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율(RVC) 계산 시, 해당 부품 가치 전체를 역내산가치로 사용 가능한 규정

[참조 1. 쟁점대상품목 – Core parts Table A.2]

Column 1 PARTS	Column 2 COMPONENTS
ENGINE	Heads, Blocks, Crankshafts, Crankcases, Pistons, Rods, Head subassembly
TRANSMISSION	Transmission cases, Torque converters, Torque converter housings, Gears and gear blanks, Clutches, Valve body assembly
BODY AND CHASSIS	Major body panels, Secondary panels, Structural panels, Frames

AXLE	Axle shafts, Axle housings, Axle hubs, Carriers, Differentials
SUSPENSION SYSTEM	Shock absorbers, Struts, Control arms, Sway bars, Knuckles, Coil springs, Leaf springs
STEERING SYSTEM	Steering columns, Steering gears/racks, Control units
ADVANCED BATTERY	Cells, Modules/arrays, Assembled packs

3) Final report 결정사항

- 자동차 원산지 판정 시, 관련 규정(부속서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역내산 판정된 Core Parts의 경우, 해당 부품의 가치 100%를 원산지 가치로 포함 가능(=Roll up 가능)

[참조 2. Core parts 원산지기준]

구분(Period)	RVC 요건
2020..07.01~2021.06.30	NC 66 (TV 76)
2021.07.01~2022.06.30	NC 69 (TV 79)
2022.07.01~2023.06.30	NC 72 (TV 82)
2023..07.01~	NC 75 (TV 85)

*NC(Net Cost) = (NC-비역내산재료비)/NC x 100, TV(Transaction value) = (TV-비역내산재료비)/TV x 100

[참조 3. Final Report – Conclusion]

Point 208 _ VII. CONCLUSION
The Panel concludes the Agreement does not include a separate, self-standing core parts “originating requirement”, and thus core parts in Column 1 of Table A.2 that are originating under Article 3.7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methodologies in Articles 3.8 and 3.9 can be included as originating material in the calculation of the RVC of a vehicle.

[KPMG 의견]

- USMCA 패널 결정에 따라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한 Roll-up 조항 적용이 허용되어 북미에 진출한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사들이 승용차 및 경량트럭에 대한 RVC 요건 75%를 충족하기 용이해 졌으며, USMCA 원산지규정 적용의 불확실성이 감소함.
- 다만, 2023년 3월 2일까지 멕시코, 미국, 캐나다는 판정 시행에 대한 동의여부를 두고 검토기간을 가지므로 3월까지 분쟁 해결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 02-2112-7542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